

## 같이 얘기할 주제

요양자 본인만큼 이 문제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또 없을 겁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들이  
요양, 재활, 복귀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1퍼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단결하면 힘과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요양자의 단결도 요양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쇼양해도 낫질 않는 것 같아...



식사도 공판도  
왜 빨리 쇼양을 끝내라고만 하는거야?



복귀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 자료 1.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 \* 1 직업성 요통으로 요양받은 노동자의 85~90%가 3개월 내에 직장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복귀 후 6개월 동안은 21%, 첫 1년 동안은 62%가 재발하였다. 첫 1년 동안 재발한 사람들 중 절반은 이로 인해 휴직하였다.
- \* 2 목 부위의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보상을 받은 노동자의 38.5%가 3년 이내에 재발하였다.
- \* 3 목 부위 통증이 있던 노동자들 중 퇴직한 사람들을 3년 뒤에 다시 조사한 결과, 퇴직한 이후에 증상이 감소한 경우는 41%였고, 나머지는 만성적인 통증을 가지고 있었다.
- \* 4 1996년까지 여러 조사 결과들을 종합한 결과,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한 목 부위의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던 사람들 중 결국 증상이 좋아진 사람들은 46%에 불과하였다.
- \* 5 요통으로 휴업 치료를 받은 뒤 현장에 복귀한 노동자들 중에 증상이 다 나아서 복귀한 경우는 30%에 불과하였다.
- \* 6 한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직업성 요통으로 장해보상판정을 받은 49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요양기간은 488.6일, 평균 휴업기간은 402.3일, 요양급여는 580만7천원, 휴업급여는 1천47만8천원, 장해보상은 564만7천원이었다.
- \* 7 병 때문에 결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단지 노동자의 건강 수준이 얼마나 좋느냐 나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복지체계나 경제적 상황, 노동자의 사회적 환경, 노동환경, 개인적 특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병 때문에 결근을 하는 것은 그 병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방식들 중 하나인 것이다.
- \* 8 병결(병에 의한 결근)이란 노동인구와 병결인구 사이의 역동적인 평형을 이룬다. 두 집단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적 요소만이 아니라 노동환경의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노동강도가 증가하면 두 집단 사이를 가로질러 이동하기가 어려워진다. 즉 노동강도가 증가하면 질병이 많아지기 때문에 병결인구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인구 중에서 더 이상 병결인구로 넘어가기 어려워진다. 또한 병결인구들은 직장 복귀 이후에 높은 노동강도 아래에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좀처럼 병결을 종료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 자료 2. 쇼양 종결의 논리

(스병원 이 모 의사)

“사회복귀가 가능한 환자가 우선 당장 건디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 혜택(?)을 받아 치료가 장기화되면 환자는 중독자가 되고 돈은 마약을 판매하는 마약장사가 가져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긴다.”

**(헤럴드경제 9/15) 졸속 도입 노사 분규의 불씨로 ; 국내 대책의 문제점 - 산재보험 요구자 양산 기업부담 가중 - 선진국 사례들 검토 시행착오 줄여야**

미국과 캐나다 등 산재예방 선진국이 지난 20년에 걸쳐 근골격계 질환예방과 대책을 둘러싸고 기업과 노조, 정부 공동으로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선진국의 노동정책과 기업별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에서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충분한 연구나 검토 없이 지난 7월 강제규정까지 둔 산업안전보건법을 졸속으로 제정, 예방효과는 없이 노사분규의 불씨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갑작스러운 제도도입으로 산재보험 요구환자를 양산시키는 한편 민주노총 등에서는 인위적인 집단산재 신청 등을 통해 노동운동의 동력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근골격계 질환문제를 노동운동의 동력으로 활용해 사용자 측에 대한 치료보상만 요구할 뿐 근로자 개인의 예방노력은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근골격계 질환의 인정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이 미흡해 산업현장에서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근골격계 질환의 직업병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고 산재 승인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에다 대기업의 경우 법정급여 외에 생계보조비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이를 합치면 월급의 110~130%에 달해 정상 근로자보다 오히려 월급을 더 받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국내 대기업도 머지않아 과도한 산재보상 및 의료비용 부담으로 경쟁력을 훼손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질환자의 조기치료 노력과 사업장 복귀 지연자에 대한 산재종결 방안, 정상근무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기업에 대한 보험차등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역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산재예방 정책을 돌아본 경총 관계자는 "우리 산업계의 경우 산재예방대책측면에서는 오히려 선진국보다 앞선 측면이 적지 않지만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실현이나 재활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며 "공장건설 단계에서부터 인간공학에 대한 선행투자를 통해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 11/5)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자] '기업안전보건위' 재계 싱크탱크 역할

산업계의 근골격계 질환 문제를 다루는 "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난 5월 한국 경영자총협회 산하에 발족돼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명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산업현장 중심의 안전보건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안전보건 현안에 대한 경영계 공동대응책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그동안 매월 1회씩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각 현안별로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를 수시로 열었다. 지난 8월21일 열린 근골격계질환 관련 법령개정 설명회에는 기업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11월6,7일 열리는 워크숍에선 산재보험제도 주요 쟁점사항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실무지침, 직무스트레스 등이 주제로 다뤄진다. 12월4일에는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았으며 지난 2.4분기엔 규제개혁위원회에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에 과중한 업무내용 신설 <>근골격계질환 치료종결기간 명시 <>요양자의 정기적 추적관리 제도화 <>근골격계 질환 보건상 조치 조항 폐지 <>근골격계질환치료기준 세분화 등 5건을 건의했다. 또 3.4분기엔 요양 및 요양연기여부의 결정 기한의 연장, 보험급여지급의 제한의 강화, 재심의청구자 자격범위의 확대, 재해조사의 법규화, 자문의사협의회 명칭 변경 및 확대 등 5건을 건의했고 4.4분기엔 산업안전 중복규제의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현재 12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중공업에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상호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 (주)신아, 대선조선 등 9개사가 활동중이다.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3개사가 멤버다. <>부위원장:경총 김영배 전무. <>위원:현대중공업 연구성 상무, 삼성중공업 이흥주 팀장, 대우조선해양 박인섭 이사, 한진중공업 송종국 상무, 현대상호중공업 김홍태 상무, 현대미포조선 문기관 이사, STX조선 이상로 이사, 대선조선 안재용 상무이사, (주)신아 남윤주 이사, 현대자동차 이후락 이사, 기아자동차 권순필 이사, 쌍용자동차 이경수 이사 <>사무국:경총 김정태 상무, 김판중 팀장, 임우택, 임남구

### (한국경제 11/19) 경총 "인력운영에 큰 차질" 근골격계 요양 평균 10~12개월 걸려

가짜 근골격계 환자와 같은 허위 산재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산재 심사의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산하 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최근 울산 현대호텔에서 개최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에서 최수영 변호사는 "조선업종의 경우 근골격계가 대부분인 산재환자의 평균요양기간 10~12개월일 정도여서 인력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비춰 사업주에게 산재심사의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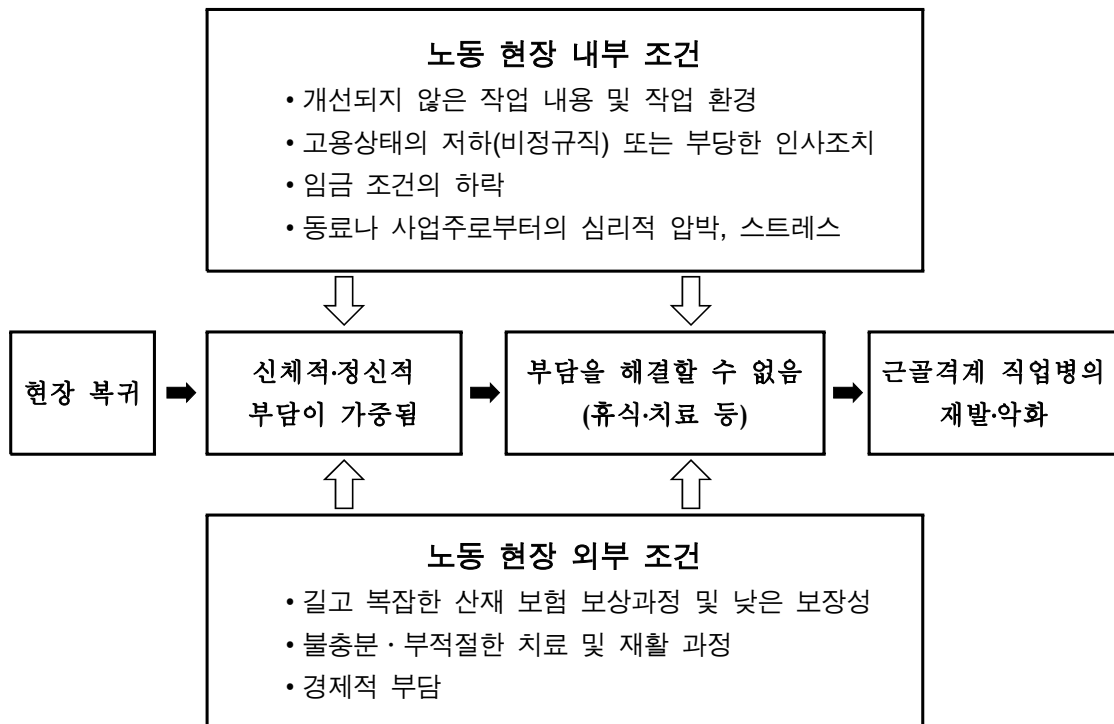
박종희 고려대 교수(법대)도 "산재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병원을 바꾸거나 도박,

음주, 노조집회 참석 등으로 치료를 게을리 할 경우 휴업급여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산재환자의 부정확한 치료 회피의 경우 사업주의 고발권과 요양 급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근골격계 산재질환의 경우 각 질환별로 경, 중, 중대 대해 표준 치료기간을 설정, 요양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서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근골격계 예방지침과 작업환경 측정에 따라 3개월에 한번씩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하는데, 작업환경 측정과 보고서 작성 등에 통상 4~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4. 현장 복귀의 원칙



다음 세가지 원칙이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

1. 증상이 호전되었다
2. 현장 작업조건이 개선되었다
3. 위 두가지 원칙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노동자이다

단, 이전 업무에 갑자기 완전히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훈련을 거쳐 복귀 여부를 노사합의하에 결정하고 복직의 형태를 판단한다.